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7894호)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중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함
- 「보안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신원조사회보서의 첨부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변경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개인별 인사기록 중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삭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후견(한정)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5의2호)

나.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

신원조사회보서의 첨부대상 범위를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 원조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회신하는 서류의 명칭을 '공무원 전력조사서'에서 '공무원 전력조회 회보서'로 수정함(안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 별 표 1)

4.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21. . 공포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공무원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의2호 중 "성년, 한정"을 "성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찰청장 또는 국가정보원장 발행"을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무원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1	신	규 채 용	인사기록사항확인서 2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기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신원증명서 2부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 증명 서 2부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 부 주민등록표등본 3부 이력서 2부 청록하력증명서 2부 청력증명서 2부 청력증명서 2부 청력증명서 2부 청리증명서 2부 청리증명서 2부 청리증명서 2부 청로사회보서(「보안업무규 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사진(명함판 2매, 증명판 4매) 6 매	 관계사유가 기재된 것(1부는 신원 행조사의뢰용임) 시, 구, 읍, 면장 발행시, 구, 읍, 면장 발행가정법원 발행병적지의 시, 구, 읍, 면장 발행자 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가・나・다・마목의 의료기관발행경찰청장(5급이하) 또는 국가정보원장(4급이상)발행
2	전	직	인사기록사항확인서 1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부	
3	면 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사직원서 1부 직권면직사유설명서 1부 판결문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 필
4	강	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 부	
5	징	계	징계의결서 1부	
6	추	서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7	沪	직	진단서 1부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서 그 밖의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 호 중가·나·다·마목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행
8	복	직	복직신고서 1부 복직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9	전 출 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 위 해 제	직위해제 사유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력조회) ① ~ ② (생	제11조(전력조회)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③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u>공무원</u>	<u>공무원</u>
<u>전력조사서</u> 를 작성하여 그 결과	<u>전력조회회보서</u>
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생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현
략)	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 2. 후견(<u>성년, 한정</u>)등기사	5의 2(<u>성년</u>)
항부존재 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u>경찰청장 또</u>	6(「보안업무
는 국가정보원장 발행)	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
	<u>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u>)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u>공무원전력조사서</u>	11. <u>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u>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